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인권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3. ~ 3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057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3년 3월 30일”을 “2025년 3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057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	대통령령 제3057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획조사팀은 <u>2023년 3월 30일까지</u>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3월 30일</u>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25